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호식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9년 1월 9일
- 회부일자 : 2019년 1월 11일

3. 제안이유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3(연가 당겨쓰기) 신설 및 제7조의6(특별휴가)의 개정 등으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충돌 또는 수정이 요구되는 조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「지방공무원 복무조례(표준안)」에 따라 삭제 또는 개정하고
- 시행령 제7조의6제6항(모성보호시간) 및 제7항(육아시간)의 시행범위와 방법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
 - ※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(특별휴가) 제1항
 -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주요내용

- 지방공무원 복무규정(대통령령)과 중복 및 충돌조항 삭제
 - 제9조, 제15조제5항, 제16조제1항~제2항, 제18조제7항과 제11항
- 근무기강 확립 조항 신설 (제5조 제1항)
 -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준수, 근무기강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

- 근무 중 복장착용에 관한 조항 신설 (제13조 제1항)
 -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함
-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어로 개정 (제17조 제1항)
 - 일본식 한자어 “지참”을 순화어인 “지각”으로 개정
- 육아시간 허가범위 및 계산방법 조항 개정 (제18조 제12항)
 - 허가범위 :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
 - 계산방법 : 사용한 날 기준 1일, 2시간 미만이라도 1일공제 등
-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조건 조항 신설 (제18조 제13항)
 - 일(日) 최소근무시간 4시간이상(시간선택제 공무원은 3시간이상)이 되어야 하고
 -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같은 날 허가할 수 없으며, 당일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.

5. 검토의견

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(대통령령)과의 중복 및 충돌 조항을 삭제하고, 근무기강 확립조항을 신설하고(제5조제1항), 근무 중 복장착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(제13조제1항), 일본식 한자어인 “지참”을 순화어인 “지각”으로 개정하고(안 제17조제1항), 육아시간 허가 범위 및 계산방법을 개정하고(제18조제12항),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조건을 신설(제18조제13항)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1부. 끝.